## KOSHA GUIDE

C - 63 - 2012

시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,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,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부에 침전한 것을 말한다.

- (바) "안내벽(Guide wall)"이란 현장타설 말뚝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 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 벽 또는 H 형강으로서,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철근망 근입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.
- (사) "트레미관(Tremie pipe)"이란 수중콘크리트나 지표면 이하에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 시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상단부의 머리부분에 설치하는 나팔관 깔대기 입구를 가진 수밀성이 있는 관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C.I.P 흙막이공사 전 안전조치 사항

- (1) 현장 여건과 진행 공종별 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각종 장비의 전도 및 협착재해를 방지하고 장비의 통로는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고 지반의 침하나 변형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철판이나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.
- (2) 세륜기 설치는 현장부지, 가설도로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고,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천공위치에 상하수도관, 통신케이블, 가스관, 고압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의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깊이 2 m 정도까지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켜야 하며, 필요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.
- (4) 반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하역작업은 중량 및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역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.